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정 1997. 2. 18 규정 제172호	1차 개정 1998. 2. 24 규정 제202호
2차 개정 1998. 8. 24 규정 제235호	3차 개정 1999. 1. 27 규정 제243호
4차 개정 2000. 2. 28 규정 제297호	5차 개정 2000. 8. 25 규정 제310호
6차 개정 2000. 12. 29 규정 제315호	7차 개정 2003. 2. 20 규정 제375호
8차 개정 2005. 1. 28 규정 제410호	9차 개정 2006. 2. 2 규정 제442호
10차 개정 2007. 2. 28 규정 제484호	11차 개정 2007. 12. 27. 규정 제509호
12차 개정 2009. 7. 2. 규정 제554호	13차 개정 2009. 11. 12. 규정 제58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학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변경은 지정기일 내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폐강)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4조 (교과목이수) ①일반대학원은 전공과목으로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8)

②산업대학원은 논문 석사과정은 24학점, 무논문 석사과정은 33학점 이상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1. 공통기초과목은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과목은 논문 석사과정은 18학점, 무논문 석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석사과정은 12학점, 무논문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③교육대학원은 논문 석사과정은 24학점, 무논문 석사과정은 30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1.1.5, 2003.2.20, 2005.1.28, 2006.2.2, 2007.2.28)

1. 일반교육학 또는 교과교육학중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교과내용학은 논문 석사과정은 15학점, 무논문 석사과정은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석사과정은 12학점, 무논문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소속 전공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④건설팅대학원은 논문 석사과정 30학점, 무논문 석사과정 36학점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18학점 이상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11.12.>

1. 공통필수과목은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과목은 논문과정 20학점, 무논문과정 2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인턴쉽과목은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있어 일반대학원장·산업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및 건설팅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은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인정 학과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2.28, 2009.11.12.)

제4조의2 (중복이수 금지) ①석사과정에서 과목번호가 다르더라도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중 수강으로 처리되어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박사과정의 수강과목이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중 수강으로 처리되

어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5조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매 학기 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성적정정) 교과목 담임교수의 착오나 행정착오로 성적정정이 필요한 해당 학기의 성적에 한하여 성적 정정 기간 내에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6조의 2(성적의 취소) ①이미 취득한 성적은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현행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동일과목(동일인정과목 및 대체이수과목 포함)으로 재수강한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2.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
3. F의 성적

②취득성적의 취소시기는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당해학기 수강신청확정일로 하며, 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내에 성적취소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취소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승인후 재 인정될 수 없다.<신설 2007.12.27.>

제6조의 3 (성적의 불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납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의 성적
2. 동일인정과목, 대체이수과목의 취득 성적 <신설 2009. 7. 2>

제7조(전공분야) <삭제 2007.2.28>

제8조 (전공변경) ①<삭제 2003.2.20>

②<삭제 2003.2.20>

제9조 (우수논문포상) ①우수 논문에 대하여서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우수논문포상은 재학 중 저명학술지에 발표 또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장학금 이중 수혜금지) 교육조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중수혜를 금지하며 중복될 경우 유리한 쪽을 수여한다. 다만 BK21사업, 특성화사업 등 특수 목적사업에 의한 장학금 수혜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복학원 제출) ①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복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 및 예비군연대를 경유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복학 : 예비군편성대상자 - 주민등록 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된 것 → 예비군연대)
2. 군제대복학 : 전역증 사본(대학원행정실) 및 주민등록 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된 것 → 예비군연대)

제12조 (자퇴원 제출) 자퇴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지도교수, 주임교수, 도서관 및 예비군연대를 경유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정 1997.3.18 규정 제17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학사예관한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차 개정 1998.2.24 규정 제202호)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차 개정 1998.8.24 규정 제2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3차 개정 1999.1.27 규정 제243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금오공과대학교산업대학원학사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4차 개정 2000.2.28 규정 제2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5차 개정 2000.8.25 규정 제310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전공분야) “별표 1”, “별표 2”의 신설학과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6차 개정 2000.12.29 규정 제315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2항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7차 개정 2003.2.20 규정 제37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이 규정에 의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이수인정 학과의 범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인정 학과의 범위는 200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과목도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차 개정 2005.1.28 규정 제410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3항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이 규정에 의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 칙(제9차 개정 2006. 2. 2 규정 제442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 중 상담심리전공의 폐지는 2005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상담심리전공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10차 개정 2007. 2.28 규정 제48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차 개정 2007.12.27. 규정 제50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차 개정 2009. 7. 2. 규정 제55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차 개정 2009.11.12. 규정 제58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